

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연결 모법인	① 법인명				② 사업자등록번호				
	③ 대표자 성명				④ 전화번호				
	⑤ 소재지								
⑥ 신고 구분		1. 정기신고, 2. 기한 후 신고			⑦ 신고일				
⑧ 연결사업연도		. . . ~ . . .			⑨ 예납기간		. . . ~ . . .		
⑩ 법인종류별 구분(연결집단)	중소기업	일반기업			⑪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법인 유무	1. 유, 2. 무			
	중견기업	상호출자제한기업	그외기업						
	30	73	83	93					
⑫ 연결법인 구분				연결집단 계		모법인	자법인	자법인	자법인
⑬ 법인종류별 구분(⑪번 "1.유" 해당 시)				개별법인 계산방식		중소, 일반	중소, 일반	중소, 일반	중소, 일반
⑭ 중간예납세액계산방법 구분						개별, 연결	개별, 연결	개별, 연결	개별, 연결
⑮ 연결법인명									
⑯ 사업자등록번호									
⑰ 직전 사업연도 월수									

신고 및 납부세액의 계산

⑱ 수입금액								
직전 사업연도	직전 법인 사업연도	⑲ 연결산출세액 (연결법인별 산출세액)						
		⑳ 공제감면세액						
		㉑ 가산세액						
		㉒ 확정세액(⑲-⑳+㉑)						
		㉓ 수시부과세액						
법인 세 기준	사업연도	㉔ 원천납부세액						
		㉕ 차감세액(㉒-㉓-㉔)						
		㉖ 중간예납세액 [㉕×(6÷직전사업연도월수)]						
		㉗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						
		㉘ 차감중간예납세액(㉖-㉗)						
자 기 계 산 준	사업연도	(미납세액, 미납일수, 세율)		(, ,2.2/10,000)	(, ,2.2/10,000)	(, ,2.2/10,000)	(, ,2.2/10,000)	(, ,2.2/10,000)
		㉙ 가산세액						
		㉚ 납부할세액계(㉘+㉙)						
		㉛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						
		㉜ 법인세율						
중 간 예 납 세 액 합 계	사업연도	㉝ 연결산출세액						
		㉞ 연결세율(㉛÷㉝)						
		㉟ 연결법인별 산출세액(㉝×㉞)						
		㊱ 공제감면세액						
		㊲ 가산세액						
중 간 예 납 세 액 합 계	사업연도	㊳ 원천납부세액						
		㊴ 중간예납세액(㉟-㊱+㊲-㊳)						
		㊵ 납부할세액계(㊴)						
		㊶ 납부할세액계(㊵+㊴)						
		㊷ 분납세액						
중 간 예 납 세 액 합 계	사업연도	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						
		㊹ 납부세액계(㊶-㊷-㊸)						

신고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※ 「법인세법」 제6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76조의18제1항제2호 적용 시		수수료 없음
	1. 재무상태표		
	2. (포괄)손익계산서		
	3. 세무조정계산서		
4. 그 밖의 참고서류 (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재무상태표, 표준손익계산서, 세무조정계산서, 그 밖의 참고서류 제출)			

작성 방법

1. ① 법인명란, ② 사업자등록번호란, ③ 대표자 성명란, ④ 전화번호란, ⑤ 소재지란: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
2. ⑥ 신고 구분란: 해당란에 "○"표를 합니다.
3. ⑧ 연결사업연도란: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적습니다.
4. ⑨ 예납기간란: 해당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입니다.
5. ⑩ 법인종류별 구분(연결집단)란: '중소기업' 과 '중견기업' 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(연결집단용)(별지 제76호의18서식) 상 적합 기업, '상호출자제한기업' 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 - "중소기업"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"○"표시를 해야 합니다.
6. ⑪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법인 유무란: ⑩ 법인종류별 구분(연결집단)란이 "2. 일반"인 경우 연결법인 중에서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"1. 유"에 "○"표 하고,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"2. 무"에 "○"표 합니다.
7. ⑬ 법인종류별 구분(⑪번 "1. 유" 해당 시)란: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연결집단 내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있을 경우에 해당 연결법인별로 "중소" 또는 "일반"에 "○"표 합니다.(⑪번 "1. 무"에 "○"표 한 법인은 적지 않음)
8. ⑭ 중간에납세액계산방법 구분란: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18제1항에 따라 중간에납세액을 계산(연결납세 계산방식)하는 경우 "연결"에 "○"표 하고, 연결법인별로 「법인세법」 제63조에 따라 중간에납세액을 계산(개별법인 계산방식)하는 경우에는 "개별"에 "○"표 합니다.
9. ⑰ 직전 사업연도 월수란: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적습니다.
10. ⑱ 수입금액란: 연결법인별로 해당 중간에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.
11.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해당 법인
 - 가. 법인세 중간에납세액을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18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거나, 「법인세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법인이 작성합니다.
 - 나. ⑲ 연결산출세액(또는 연결법인별 산출세액)란: 직전 사업연도의 "연결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6서식)"의 ⑩ 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으며,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연결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"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3호서식)"의 ⑮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 - 다만, 수정신고,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,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.
 - 다. ⑳ 공제감면세액란: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,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.
 - 라. ㉓ 수시부과세액란, ㉔ 원천납부세액란: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원천징수된 세액, 수시부과요건에 해당되어 직전 사업연도에 부과된 수시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.
 - 마. ㉗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란: 해당 중간에납기간 중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.
 - *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에납세액(㉘)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.
 - 바. ㉙ 가산세액란: 기한 후 신고·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다음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.
 - * 미납세액에 가산세율(2.2/10,000를 적용하되,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/10,000을,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.5/10,000를 적용한다)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.
 - 사. ㉚ 납부할 세액 계란: "개별법인 계산방식"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(-)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"0"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"납부할 세액 계"를 계산합니다.
12. 자기계산기준 해당 법인
 - 가.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18제1항제2호 또는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중간에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만 해당합니다.
 - 나.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18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"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6서식)"의 작성방법을 준용하고, 「법인세법」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"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(별지 제3호서식)"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.
 - 다. ㉛ 법인세율란: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18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"연결집단 계"의 "연결납세 계산방식"란에만 연결집단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습니다.
13. ㉝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: ⑭ 중간에납세액 계산방법 구분란에서 "개별"에 해당하는 법인은 ㉞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서 ㉚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.
14. ④ 납부할세액 계란: "개별법인 계산방식"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(-)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"0"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"납부할 세액 계"를 계산합니다.
15. ④ 납부할 세액 계란: "연결납세 계산방식"에 따라 산출된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(-)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"0"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"납부할 세액 계"를 계산합니다.
16. 연결집단 분납세액(㉜ 분납세액)의 납부기한: ⑩ 법인종류별(연결집단)란의 "1. 중소"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이며, "2. 일반"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입니다.
17. ■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.